# 전공제 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성공회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전공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06.21.>

## 제2장 전공 선택 및 변경

- **제2조(전공)** ① 전공이라 함은 최소단위의 특정 분야 교육과정으로 주전공, 복수전공, 부전 공, 마이크로전공으로 구분된다. <개정 2020.02.19. 2023.07.19>
  - ② 주전공은 최소 42학점, 복수전공은 최소 30학점, 부전공은 최소 21학점, 마이크로전공 은 20학점 이내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. <개정 2020.02.19. 2023.07.19>
- 제3조(전공 선택 유형 및 시기) ① 3학기에 전공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08.25.〉
  - ②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은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되, 반드시 소속학부에서 한 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.
  - ③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이수 유형은 각 호의 1과 같다.
    - 1. 제1유형: 주전공, 부전공으로 구성되며 4학기부터 이수한다.
    - 2. 제2유형: 복수전공1, 복수전공2로 구성되며 4학기부터 이수한다.
    - 3. 제3유형: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을 이수하는 학생이 부전공이상의 혁신융합전공을 위해 설계된 교육과정을 6학기부터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2.19.>
    - 4. 제4유형: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을 이수하는 학생이 부전공이상의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위해 설계된 교과과정을 6학기부터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.
  - ④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은 3학기 중 전공 선택 기간에 이수 신청을 한다.
  - ⑤ 제3유형 또는 제4유형은 5학기 중 전공 선택 기간에 이수 신청을 한다.
  - ⑥ <삭제 2021.08.25.>
  - ⑦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은 학생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유형으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의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.
- **제3조의 2(편입학생의 전공 선택 유형 및 시기)** ① 입학하는 학기에 전공 이수 신청을 한다. 〈신설 2022.10.19.〉
  - ② 전공 선택은 소속 학부에서 주전공(42학점)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이를 졸업요건으로 한다. 다만, 희망자의 경우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. 〈신설 2022.10.19.〉
- 제4조(혁신융합전공) ① 혁신융합전공은 제3조 제3항에 따른 제3유형의 전공으로 본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혁신융합 교육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는 전공이다. <개정 2020.02.19.>

- ② 혁신융합 교육과정은 타전공에서 기 개설된 과목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최대 9학점까지 신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2.19.>
- ③ 혁신융합 교육과정으로는 학칙(별표 1)에 따르며,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. <개정 2020.07.15.>
- 제5조(자기주도설계전공) ① 자기주도설계전공은 제3조 제3항에 따른 제4유형의 전공으로 학생 스스로 설계한 부전공이상의 자기주도설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전공이다. <개정 2020.02.19.>
  - ② 자기주도설계전공을 원하는 학생은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자기주도설계 교육과정을 설계한 뒤 소속학부 학부장 및 교육과정 설계 시 정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도설계전공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이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2.19. 2023.06.21>
- **제6조(전공 변경)** ① 전공 변경은 5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21.08.25.〉
  - ② 제3조 2항에 따라 소속학부 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전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.
  - ③ 변경 이전 전공에서 취득한 전공 과목은 변경 이후 전공의 주임교수 승인을 거쳐 인정할 수 있는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하되 그렇지 않은 과목은 교양으로 변경된다.

## 제3장 특별교육과정

- 제7조(해외교육과정) ① 해외교육과정은 30학점 이상으로 구성된 복수전공 과정으로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을 선택한 이후 5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다.
  - ② 해외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.
  - ③ 해당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전공이수 유형이 소속학부 복수전공과 해외교육과정 복수전공으로 구성된 제2유형으로 변경된다.
  - ④ 단,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이수 유형을 그대로 인정하고 해외교육과정은 특별교육과정으로 추가 인정한다. 〈신설 2023.12.27.〉
- **제8조(평생교육사과정)** ① 평생교육사과정은 30학점 이상으로 구성된 복수전공 과정으로 전 공을 이수한 이후 변경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평생교육사과정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.
    - 1.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.
    - 2.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전공 이수 유형이 소속학부 복수전공과 평생교육사과정 복수전공으로 구성된 제2유형으로 변경된다.
  - ③ 단,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평생교육사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이수 유형을 그대로 인정하고 평생교육사과정은 특별교육과정으로 추가 인정한다. 〈신설 2023.12.27.〉

## 제4장 전공 신설, 전공명 변경 및 통합

제9조(전공 신설) 삭제<2023.06.21.>

제10조(전공명 변경) 삭제<2023.06.21.>

제11조(전공 통합) 삭제<2023.06.21.>

제12조(내규) 각 융합자율학부 및 전공별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. 〈신설 2020.10.21.〉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 한다.

### 부 칙

① 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 한다.

#### 부 칙

① 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 한다.

### 부 칙

① 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시행 한다.

#### 부 칙

① 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 한다.

#### 부 칙

① 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 한다.

#### 부 칙

① 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 한다.

### 부 칙

① 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 한다.

### 부 칙

① 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